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12. 5. 1.
개정 2017. 5. 20.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7. 1.

『윤리학』 논문심사 규정

1. 투고 논문심사는 6월과 12월 년 2회 한다.
2. 투고 논문은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 행위가 없어야 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

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3.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다. 편집위원회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 모집을 통해 발간하는 특집 논문 역시 일반 논문과 동일하게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모든 논문은 투고자와 심사위원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투고자의 이해상충 보고를 고려하고, 심사자를 제척할 수 있고, 심사자의 회피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6. 각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들의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논문심사 규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비고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4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약식심사	*
5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6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약식심사	*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약식심사: 기존 심사위원 2인으로 재심사 후 게재 여부 판정
- * 게재가는 JAMS 판정기준의 “게재가능”과 “게재가능(수정후 게재)”를 포함함.
- * “게재가능(수정후 게재)”의 심사의견이 1인 이상 나온 경우, 수정표와 함께 최종본을 제출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함.

5.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해당 투고문의 심사자를 추천한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심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제외한 2인을 지명하여 이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한다.